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 규정 삭제 등 〉

■ 박균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823호)

202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세 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헌법재판연구원 정원 규정 삭제 및 기관장 직급 조정 등	3
2. 관계기관 의견	1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균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0. 30.

(3) 회 부 일 : 2025. 10.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 및 헌법재판의 연구·교육의 대표기관으로서, 헌법적 쟁점에 대한 선제적 연구는 물론,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헌법 교육을 제공하여 국민의 기본권 의식을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음.

그러나 현행법은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을 ‘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연구·교육 기능의 확대나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 새로운 쟁점 증가에 따른 인력 확충 수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법률상 헌법재판연구원장을 헌법연구관으로 보하거나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의 공공성과 중요성 및 유사한 성격의 타 기관장 직급과의 형평

성 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연구원이 대내외적 상황 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상 정원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다른 유사 기관장과의 직급 차이 해소를 통한 우수 인재 영입 및 대내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차관의 보수를 받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Ⅲ. 검토의견

1. 헌법재판연구원 정원 규정 삭제 및 기관장 직급 조정 등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을 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정원의 규정을 삭제하고(안 제19조의4제2항), 헌법재판연구원 기관장의 직급을 현행 헌법연구관 또는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에서 헌법연구관 또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고,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의 같은 액수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19조의4제3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의4(헌법재판연구원) ① (생략)	제19조의4(헌법재판연구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고, 원장 밑에 부장, 팀장, 연구관 및 연구원을 둔다.	② 헌법재판연구원에 원장 1명, 부장, 팀장, 연구관 및 연구원을 둔다.
③ 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 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연구관으로 보하거나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 -----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고,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액수로 한다.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나. 현행 「헌법재판소법」 및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상 헌법재판연구원 관련 규정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에서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설치 근거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와 헌법연구관, 사무처 공무원 등의 교육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연구원을 두되(제1항),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고, 원장 밑에 부장, 팀장, 연구관 및 연구원은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항).

한편, 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연구관으로 보하거나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제3항),

부장은 헌법연구관이나 2급 또는 3급 일반직공무원으로, 팀장은 헌법연구관이나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연구관 및 연구원은 헌법연구관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하되(제4항),

연구관 및 연구원은 i)헌법연구관, ii)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포함한다), iii)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iv)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보하거나 헌법재판연구원장의 제청을 받아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5항).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헌법재판연구원)]

- 제19조의4(헌법재판연구원) ①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와 헌법연구관, 사무처 공무원 등의 교육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연구원을 둔다.
- ②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고, 원장 밑에 부장, 팀장, 연구관 및 연구원을 둔다.
- ③ 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연구관으로 보하거나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 ④ 부장은 헌법연구관이나 2급 또는 3급 일반직공무원으로, 팀장은 헌법연구관이나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연구관 및 연구원은 헌법연구관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 ⑤ 연구관 및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보하거나 헌법재판연구원장의 제청을 받아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1. 헌법연구관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포함한다)
 3.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4.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⑥ 그 밖에 헌법재판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다.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을 4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정원 규정을 삭제하여 헌법재판소규칙으로 관련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재판연구원장은 헌법연구관 또는 정무직공무원(차관급) 중에서 임명될 수 있도록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와 교육 등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조직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연구원의 사회적 위상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개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개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의 내용 중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을 법률로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은 헌법기관 소속 연구원 또는 교육원으로서 헌법재판연구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등을 규정한 법률과의 관계,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게 된 입법적 배경 및 연혁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개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재 헌법기관 소속 연구원 또는 교육원으로서 헌법재판연구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살펴보면,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 감사원 소속 감사교육원 및 감사연구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선거연수원 등을 살펴볼 수 있음.

그런데 각 기관의 설립근거 및 정원에 관한 근거를 살펴보면,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소법」에 조직설립의 근거와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반면, 「법원조직법」, 「감사원법」, 「선거관리위원회법」의 경우 조직설립의 근거는 법률에 규정하되, 정원에 관하여는 별도로 법률에 규정을 두지 않고 규칙 또는 직제에서 관련 사항을 정하

고 있어 각 기관간에 차이가 있는 점을 살펴볼 수 있음.

[헌법기관 소속 연구·교육원 관련 설립 및 정원 근거]

설립	대법원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	사법정책 연구원	법원공무원 교육원	감사 교육원	감사 연구원	선거 연수원
설립근거 규정	「법원조직법」 제20조의2	「법원조직법」 제21조	「감사원법」 제19조의2	「감사원법」 제19조의4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2
정원 규정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감사교육원 직제 제5조	감사연구원 직제 제5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운영 규정	사법정책 연구원 운영규칙	법원공무원 교육원규칙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감사연구원 직제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헌법기관 소속 연구·교육원 관련 법률]

「법원조직법」 제20조의2(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정책연구원을 둔다.

제21조(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직원·집행관 등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둔다.

「감사원법」 제19조의2(직무 및 조직) ① 감사원 소속 직원 및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의 감사 또는 회계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교육원을 둔다.

② 감사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의4(직무 및 조직) ① 감사대상 기관의 주요 정책·사업·기관운영 등의 회계검사, 성과감사 및 직무감찰과 관련된 감사제도 및 방법 등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연구원을 둔다.

② 감사연구원은 각종 감사제도와 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등 감사 인프라의 구축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감사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2(선거연수원) ① 선거·정당사무에 관한 공무원의 교육과 선거·정당관계자에 대한 연수를 위하여 사무처에 선거연수원을 둘 수 있다.

② 선거연수원에 원장 1인을 두며,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선거연수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한편,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헌법재판연구원)는 2010년 5월 4일 해당 규정이 신설되었는바, 당시 정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게 된 배경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독립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에 별도로 정원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舊 기획재정부(現 기획예산처)와 예산 협의만 있다면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도 조직을 늘릴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자의적인 조직 확대에 대한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음¹⁾.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연구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헌법기관 소속 연구·교육원의 설립 및 정원에 관한 법률 규정과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 규정의 신설 당시 정원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규정된 입법 배경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개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 제18대 국회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0. 4. 14.) 회의록 참조

“정원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서 정부공단법에 준해서 이렇게 그냥 두느냐 아니면 또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은 원장 1인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고 원장은 헌법연구관 또는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조직 확충에 있어서 행정안전부랑 협의를 하지 않고 기획재정부랑 예산만 협의하면 조직을 늘릴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법에 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가 돼서 이럴 경우는……정원은 국회 통제를 받으라는 취이지요? 예”

둘째, 개정안의 내용 중 헌법재판연구원장의 직급을 현행 “헌법연구관 또는 1급 공무원”에서 “헌법연구관 또는 정무직공무원(차관급)”으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연구원장의 위상 및 역할 제고 측면과 헌법기관 소속 연구원 또는 교육원 등 기관장 직급과의 형평성 측면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개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에 따르면 헌법재판연구원장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연구관으로 보하거나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연구원장의 직급이 개정안과 같이 “헌법연구관 또는 정무직공무원(차관급)”으로 조정되는 경우 헌법재판연구원장에 사회적 명망이 있는 우수한 외부 인재가 영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고, 헌법재판연구원이 수행하는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전문 연구·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위상이 함께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헌법재판연구원 외에 다른 헌법기관 소속 연구원 또는 교육원 등 기관장의 직급에 대해 살펴보면, 사법정책연구원과 법원공무원교육원의 기관장은 판사 또는 차관급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감사교육원과 감사연구원의 기관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선거연수원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원 소속 연구원 및 교육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연구원장의 직위는 다른 헌법기관과 유사한

정도의 수준인 것을 살펴볼 수 있음.

[헌법기관 소속 연구·교육원 기관장의 직급]

구 분	헌법재판소	대법원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 연구원	사법정책 연구원*	법원공무원 교육원	감사 교육원	감사 연구원	선거연수원
기관장 직 급	헌법연구관, 1급 일반직국가공무원	판사, 정무직(차관급)		고위감사공무원단 ²⁾ 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이사관 (2급) 또는 부이사관(3급)
정 원	38명	54명 (2014년, 40명)	68명 (2005년, 47명)	34명	35명	53

[헌법기관 소속 연구·교육원 기관장의 직급 관련 규정]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10조(연구원장) ① 연구원장을 정무직으로 임명할 때에는 그 후 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② 법관이 아닌 사람이 연구원장이 된 경우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감사원법」 제19조의3(직원) ① 감사교육원에 교육원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교육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직원의 정원·임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5(직원) ① 감사연구원에 연구원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연구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직원의 정원·임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2(선거연수원) ① 선거·정당사무에 관한 공무원의 교육과 선거·정당관계자에 대한 연수를 위하여 사무처에 선거연수원을 둘 수 있다.

2) 고위공무원단은 가등급과 나등급으로 나뉘며, 가등급은 실장급(1급 상당), 나등급은 국장급(2~3급 상당)임.

② 선거연수원에 원장 1인을 두며,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연구원장의 직급의 변경(1급일반직국가공무원 →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에 따른 우수한 외부 인재 영입의 필요성 측면과 다른 헌법기관 소속 연구·교육원 등과의 형평성 담보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개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관계기관 의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연구원이 급변하는 대내외적 상황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조직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된 정원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는바, 국회 및 기획예산처 등으로부터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인력 증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므로 적절한 통제가 가능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헌법재판연구원의 역할과 위상, 우수한 인재 영입 및 원활한 대내외 업무 수행을 위해 헌법재판연구원장의 직급 조정이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058

참고 1**헌법재판연구원 역대 헌법재판연구원장**

2026. 2. 1.	김인숙 제9대 헌법재판연구원장 취임
2024. 9. 9.	지성수 제8대 헌법재판연구원장 취임
2023. 9. 9.	김하열 제7대 헌법재판연구원장 취임
2021. 9. 9.	이헌환 제6대 헌법재판연구원장 취임
2019. 9. 9.	박종보 제5대 헌법재판연구원장 취임
2018. 12. 3.	헌법재판연구원 청사 이전(나라키움 역삼 B빌딩)
2017. 9. 1.	석인선 제4대 헌법재판연구원장 취임
2015. 6. 16.	전광석 제3대 헌법재판연구원장 취임
2013. 6. 4.	김문현 제2대 헌법재판연구원장 취임
2011. 4. 11.	허영 헌법재판연구원장 취임
2011. 1. 1.	헌법재판연구원 개원
2010. 5. 4.	헌법재판소법 개정법률 공포
2010. 4. 21.	헌법재판연구원 설립 관련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